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3월 27일, 정동만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2026년 3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5.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6.5.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 폐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5.20.) 상정, 소위심사보
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동만의원)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지원,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여전히 담보력이나 재무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연계·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한 시책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금융지원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기술혁신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제6호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성소미)

현행법 제3조(정부 등의 책무)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연구기관의 일반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있

음1). 구체적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에 성공한 비율이 51.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평가 기반 금융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²⁾ 이를 통해 기술력은 우수하나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을 돕고, 담보나 재무제표 중심의 기존 자금공급 관행을 기술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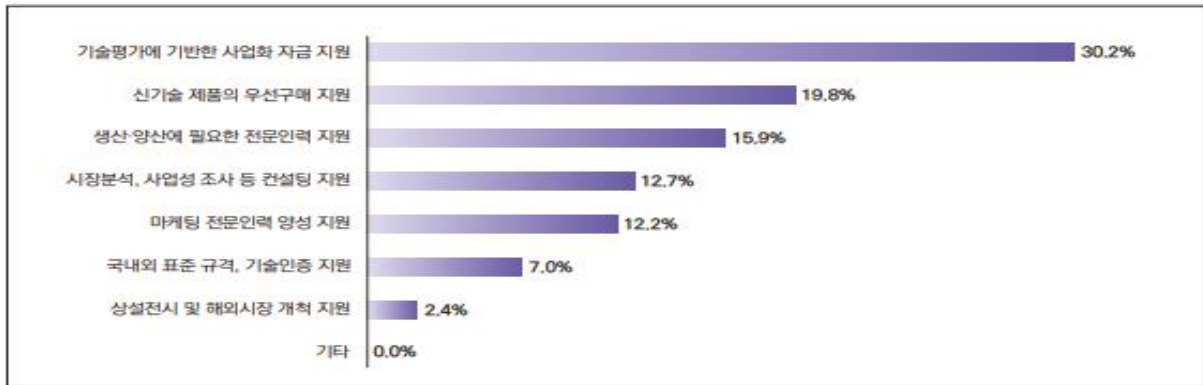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2024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2024.12.)

- 개발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기술평가에 기반한 사업화 금융지원”이 1순위(30.2%)를 차지

[표 1] 개발기술 사업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책



자료: 2024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74p)

다만, 현행법상 시책 수립 주체별 역할 분담 체계를 고려할 때, 정부에는 기술금융 시책의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되 독자적인 정책 추진 여력이 상이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 실정에 맞게 기술금융 시책을 재량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운영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동 시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체계를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기술금융지원 확대는 기존의 담보력이나 재무실적 중심의 자금공급 관행을 기술력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기술력 및

성장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의 확보가 필수적임. 기업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통합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을 촉진계획에 포함함으로써, 빅데이터 기반의 AI 기술평가 모델 도입 등 기술금융의 과학화·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현행법 제5조제2항제6호3)에서 이미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을 촉진계획의 필수 포함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기술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의 연계·활용”이 현행 규정과 내용상 중복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조문 신설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기술금융 관련 정보의 연계 및 활용 목적이 결국 기술력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에 있음을 감안할 때, 별도의 호를 신설하기보다 현행 제6호에 정보의 연계·활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 규정하는 방안이 입법 경제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6.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7.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하 “비수도권 지역”이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현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특허, R&D 성공이력, 기술 인력 현황 등 기술 가치평가 데이터 공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위원회(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대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반영폐기)